

대학원 의학융합학과 운영 내규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의학융합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본 학과는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의 융합을 바탕으로 전환연구 및 융합형 의과학 연구인력 양성을 지향한다.

제2조(적용범위와 효력) 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의학융합학과의 석사과정, 박사과정 및 석·박사통합과정에 적용되며,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진다.

제2장 입학관리

제3조(우수학생의 유치) 의학융합학과 소속 교수는 석사과정, 박사과정 및 석·박사통합과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학생의 모집과 유치에 적극 노력한다. 학과는 임상교원, 전공의, 전임의 및 기타 관련 분야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모집을 시행할 수 있다.

제3장 논문지도

제4조(지도교수의 선정)

- ① 본 학과는 필요에 따라 기초의학 교수와 임상의학 교수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지도교수제를 운영한다.
- ② 학생은 세부 전공 및 연구 분야에 따라 기초의학 1인 및 임상의학 1인 등 총 2인의 논문지도교수를 신청하고,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과주임교수가 이를 확정한다.
- ③ 논문지도교수 변경 시에는 적합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, 변경 전후 지도교수의 동의를 받아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4장 자격시험

제5조(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)

- ① 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은 석사과정, 박사과정 및 석·박사통합과정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.
- ② 면제기준의 조건, 면제 과목 수 및 인정 범위는 [별첨 1]과 같이 정한다.

제6조(종합학력시험 출제와 채점)

- ① 응시과목은 석사과정 2과목, 박사과정 4과목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지도교수의 과목은 2개 이상 선택할 수 없다. 다만 특별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.
- ③ 시험 방법은 필기시험 또는 구두시험으로 시행할 수 있다.
- ④ 각 교과목당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.

제7조(외국어시험 과목) 외국어시험은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른다. 다만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학과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5장 학위과정

제8조(학위과정) 본 학과는 석사과정, 박사과정 및 석·박사 통합 과정을 운영한다.

제9조(학위취득 자격요건) 학위취득 자격요건은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른다. 다만 본 학과는 융합연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석사 학위취득 자격 요건은 SCIE급 논문 1편 투고(submission), 박사 학위취득 자격 요건은 SCIE급 논문 2편 (Q1 기준 1편) 승인(accept)으로 한다.

제10조(학위논문의 심사)

- ① 논문심사 절차는 자격시험, 학위논문 작성, 예비심사, 본심사의 순으로 진행한다.
- ② 박사과정 및 석·박사통합과정의 논문심사는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른다.

제11조(학위과정의 변경) 학위취득과정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. 다만 사유서를 첨부하여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변경할 수 있다.

제6장 학과 운영위원회

제12조(의사결정 방식)

- ① 학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학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·의결한다.
- ② 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전체교수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교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내규는 대학원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첨 1]

응시 과목 수	시험 면제 조건	면제 과목 수	저작 역할	게재 인정 일자
석사: 2 박사: 4	SCIE급 학술지 논문 게재	2과목	공동 저자까지 인정	본 학과 입학 이후 취득한 실적부터 학위 수여일 이후 1년 이내 취득한 실적까지 인정
	학술진흥재단 등 학술지 논문 게재	1과목		
	학술 발표	국제 1건당 1과목 국내 2건당 1과목		
	학과에서 인정하는 업적이 있는 경우, 심의를 거쳐 면제 여부 결정	석사: 2과목 박사: 4과목		